

## 청렴서한문

안녕하십니까? 강남구청장 신연희입니다.

강남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늘 함께해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강남구에서는 최근 업무와 관련하여 구청을 방문해 주신 민원인 여러분의 고견을 듣고 제도개선, 서비스 향상 뿐만 아니라 민원 처리시의 부당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 민원처리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경우 서슴지 마시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센터' 로 신고해 주시면 철저하게 조사하여 부패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조치하겠습니다.

강남구 전직원은 "공직자가 청렴하면 국민이 절로 편안해진다(官淸民自安) '는 명심보감의 한구절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부정·부패없는 깨끗한 공직사회와 청렴도 향상에 앞장서 구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강남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앞으로도 부패없는 깨끗한 「청렴도시 강남」 실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공무원의 금품수수·식사대접·편의제공 요구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고사항은 철저한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로 인하여 어떠한 불편이나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신고접수 : 강남구 공직자 부조리 신고 Tel 02-3423-5159

. ○○. ○○.

### 강남구청장

# 강 남 구

수신자 :

06347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51길 49,

제 목 : 지방세 감면결정 통지 및 의무사항 준수 안내

1. 귀하께서 2017년 월 일에 제출한 지방세 감면신청에 대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 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과세물건 :

년도	기분	세 목	과세번호	당초결정세액	감면결정세액	납부세액	납부기한
201602	신고분	취득세 자동차		)	40	0	
결정사유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배기량2,000cc이하,7~10인승,2006년도이전 화물자동차)						

2. 아울러 장애인용 등(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그 시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된 차량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셔야 하며, 미신고납부 시 이미 감면된 차량취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됩니다.

3.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세대를 분가할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된 시점부터 기존에 받으시던 자동차세 감면은 종료되어 자동차세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4. 대체취득으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 받은 경우에는,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면제 받았던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여야 합니다.

5.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과세물건의 감면신청에 대해서는 감면결정 통지와는 별도로 이미 감면된 차량 취득세에 가산세가 추가되어 추징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강 남 구 청



기안자

팀장

과장

시행

세무2과

접수

우

135-705 주소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5725 /전송

/

